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2022년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3
Ⅲ.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호봉 재획정 업무 부적정5
2) 징계 등 관련 내부규정 개정업무 부적정 10
3) 이사회 운영 부적정 14
4) 청소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18
5)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22
6)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27

# Ⅰ.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상남도청소년지원 재단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전반,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021년 채용실태조사 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2. 2. 7.부터 2. 11. 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2. 11. 경상남도청소년 지원재단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06. 12. 18. 법인 설립 등기

○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

○ 설립목적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및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

###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 기획실 등 6개 기구

○ 인 력: 정원 54명 / 현원 49명

### 3. 재정 현황

○ 예 산 : 3,101백만 원(2021년도 경영공시 기준)

○ 자 본 금 : 300백만 원(도 출연 100%)

### 4. 주요 사업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
- 청소년지도자 맞춤형 교육훈련
- 시·군 센터 동행사업
- 일시보호사업 등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경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부과
계	9	2	5	1	0	8	0	2	6	4,905	4,905	0	0	0
처분요구	8	2	4	1		8		2	6	4,905	4,905			
현지조치	1		1											

#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 붙임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호봉 재획정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조 치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직원을 신규로 임용하면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재직 중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호봉 재획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청소년재단「보수규정」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제10조(호봉승급기간 등)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임용시의 기준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산정기준표에의하여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하고,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경우,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직원이승진할 때에는 1호봉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보수규정」제3조(정의) 및 제49조(준용규정)에 따르면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7조(호봉의 정정) 및「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처리지침」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고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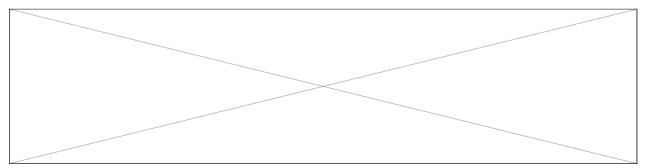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인사규정」제18조(정기승급) 및 제20조(승급의 제한)에 따르면 직원의 정기승급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1년이며,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년, 강등·정직은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승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1)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승급 제한기간 중에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호봉 재획정을 하거나 승급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호봉 재획정 및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호봉정정을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2019. 6. 11. '감봉3월' 징계처분을 받은 당시 ○○○○ ○○○('○○. ○○. ○○.생)에 대해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후 1년이 지난 2020. 9. 11.까지 승급 제한기간이라 그 기간 중에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어도 호봉 재획정을 하면 아니 됨에도 2019. 12. 4. "재단 직원 호봉 재획정 보고(○○○-○○○호)" 방침을 받으면서 [그림]과 같이 ○○팀장 ○○○에 대해 타기관 경력을 인정해주는 호봉 재획정을 하였다.

[그림] 재단 직원 호봉 재획정 보고 방침문 내용 중 일부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 자료]

<sup>1)</sup> 법인의 이사회 운영, 인사·복무·조직 관리,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

또한 ○○○의 경우 승급 제한기간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20. 9. 12.을 기준으로 호봉 재획정을 하였다면 [표 1]과 같이 경력합산이 20년 4일이 되어 21호봉이 될 것이나 2018. 7. 10. 팀장으로 승진하였기에 1호봉을 감하여 20호봉이 되고(잔여일 4일)차기승급일은 12개월 뒤인 2021. 10. 1.이 됨에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그보다 12개월 빠른 2020. 10. 1.에 기존 20호봉에서 21호봉으로 승급을 단행하였다.

### [표 1] ○○○ 호봉 재획정 내역

### ❖ (당초) 청소년재단 ○○○에서 작성한 산정내역

(기준일 : 2020. 1. 1.)

경력기간(연.월.일.)	경력내용	경력산정 (년월일)	인정율 (%)	경력합산 (년월일)		호봉 (승급월)	비고
'06. 1. 1.~'15. 7.31.(9.7.0.)	청소년재단	13.8.15.	100	13.8.15.			
'15.11.16.~'19.12.31.(4.1.15.)		13.0.13.	100	13.0.13.	20.6.23.	20 (7월)	*팀장 승진
'95. 7.27.~'97. 9.25.(2.1.29.)	군 경력	2.1.29.	100	2.1.29.	20.0.23.		(-1)
'00. 2.19.~'05.12.31.(5.10.12.)	○ ○ 청소년재단	5.10.12.	80	4.8.9.			



❖ (수정) 승급 제한기간 해제 후 호봉 재획정한 경우

○ 호봉 재획정 결과 : 20. 0. 4. +(팀장 승진-1) → 20호봉(잔여기간 4일)

○ 차기승급 : 2021. 10. 1.(21호봉, 잔여기간 23일)

○ 호봉 재획정 : 징계효력 말소(5년) 후 12개월 산입

(기준일: 2020. 9. 12.)

경력기간(연.월.일.)	경력내용	경력산정 (년월일)	인정율 (%)	-	경력합산 (년월일)		ᄓ
'06. 1. 1.~'15. 7.31.(9.7.0.)	청소년재단	13.1.26.	100	13.1.26.			
'15.11.16.~'19. 6.10.(3.6.26.)	6 <del>+</del> 현세년	15.1.20.	100	13.1.20.	20.0.4.	20	*팀장 승진
95. 7.27.~'97. 9.25.(2.1.29.)	군 경력	2.1.29.	100	2.1.29.	20.0.4.	(10월)	(-1)
'00. 2.19.~'05.12.31.(5.10.12.)	○ ○청소년재단	5.10.12.	80	4.8.9.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 자료 재구성]

결과적으로 청소년재단 ○○○에서는 당시 ○○팀장 ○○○가 징계처분으로 승급 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호봉 재획정을 하여 호봉을 높여 주었고, 차기승급을 12개월이나 단축시켜줌으로써 [표 2]와 같이 ○○○에게 기존 호봉 기준보다 기본급 2,776,290원 및 수당액 1,817,860원 등 총 4,594,150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

[표 2] ○○○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과다지급 내역

(단위:원)

	합계		기본급		수당			
<b>구구</b>	(3+6)	①기지급	②호봉정정시	③차액 (①-②)	④기지급액	⑤호봉정정시	⑥차액 (④-⑤)	
	4,594,150	60,558,520	57,782,230	2,776,290	55,941,040	54,123,180	1,817,860	
2020년	3,933,460	28,720,650	26,363,760	2,356,890	27,376,920	25,800,350	1,576,570	
2021년	598,380	29,367,120	28,979,040	388,080	25,619,330	25,409,030	210,300	
2022년	62,310	2,470,750	2,439,430	31,320	2,944,790	2,913,800	30,990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 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청소년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인사규정」제20조(승급의 제한)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과오가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② 청소년재단「인사규정」제20조(승급의 제한) 등을 위반하여 호봉 재획정한 당시 ○○○ 팀장 ○○○의 호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7조(호봉의 정정)에 따라 정정하고 수당을 포함하여 과다 지급된 급여 4,594,15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징계 등 관련 내부규정 개정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조 치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개정할 규정이 있는 경우 수시로 제·개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통보한「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제69조 내지 제73조의3)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에 따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하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재단「인사규정」(2021. 3. 10. 일부개정 시행)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따르면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감사결과 처분) 제2항에 따르면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아니한 경우 훈계를,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필요한 경우 주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1)에서는 재단 직원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경우「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경남도를 비롯한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 소속 직원에 대해 훈계 등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훈계 등의 처분 근거를 내부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징계효력 규정 부적정

그런데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2021. 8. 2. [표 1]과 같이「인사규정」일부 개정(안)을 작성하면서「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 상위 법령상의 징계처분 효력 규정에 위배되게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호를 종전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에서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감한다."로 변경한 후 이사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같은 해 8. 5.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하였다.

<sup>1)</sup> 법인의 이사회 운영, 인사·복무·조직 관리,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

그 결과 중징계인 '정직'처분과 경징계인 '감봉'처분에 있어 보수의 감액 차이<sup>2)</sup>가 전혀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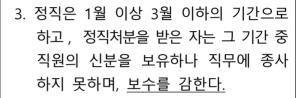
[표 1] 청소년재단「인사규정」개정(안) 제26조 신구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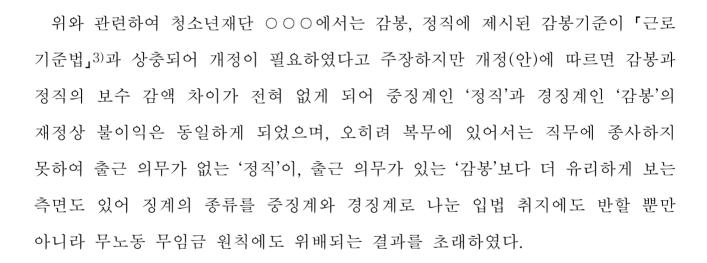
#### 종전(2021. 3. 10. 시행)

-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u>보수의 3분의 1을 감</u> <u>한다.</u>
-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u>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u>

#### 개정(안)(2021. 8. 5. 시행)

-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u>으로</u> 한다.





참고로 경남도내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타 시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보수를 전액 감액하거나 3분의 2를 감액 하는 경우는 있어도 청소년재단과 같이 감봉처분과 동일하게 감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sup>2)</sup> 청소년재단「인사규정」제26조 제5호에 따라 '정직', '감봉' 처분 모두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 분의 2분의 1을, 감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감액 차이가 없게 됨

<sup>3) 「</sup>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징계 외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규정 미흡

청소년재단 ○○○에서는 경남도 감사를 비롯해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 등 경미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내부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그동안소속 직원들에 대해 훈계처분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훈계처분대장등 부존재, 별도의 훈계장 없이 개인별 공문 통보로 갈음)도 되지 않아 [표 2]와같이 과거 지적된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표 2] 반복 지적된 유사 사례

2014년 종합감사(행정·신분상 조치)	2019년 종합감사(행정·신분상 조치)
○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시정)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훈계)
○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주의)	○ 공가사용(연가보상비) 부적정(회수)

#### 관계기관 의견

청소년재단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내부 규정을 제·개정 하겠다고 의견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 ① 청소년재단「인사규정」의 징계효력 부분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훈계 등의 처분 근거를 내부규정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주의 요구

제 목 이사회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조 치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재단 운영의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운영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2조(설립 및 운영) 및 제10조(이사회)에 따르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및 제16조(소집)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정관」제18조(서면결의) 및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서면 결의사항을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심의,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사회 운영규정」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sup>1)</sup>에 의거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과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에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서면의결을 할 수 있고, 서면결의 사항은 소집된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의결서 포함)은 출석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세입세출예산·결산, 원장 연임 승인, 예치금사용계획<sup>2)</sup> 등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고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2019. 2. 26.부터 2022. 2. 11.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표 1]의 ⑤~⑭와 같이 10회의 이사회를 연속해서 서면의결로 처리함으로써 서면 결의사항을 차기 소집 이사회에 보고하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서면 결의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지도 않았다.

<sup>1)</sup> 회의록과 의결서로 구분되어 있고, 의결서는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sup>2)</sup> 예치금 13,607,313원을 성립전예산(예비비)으로 편성(〇〇〇-〇〇〇, 2020. 11. 13.)하여 선지급(2020. 11. 17.)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 5,500,000원의 사용계획임

[표 1] 이사회 개최 현황(2019~2021년)

연번	개최일자	안건	회의방법
1	2019. 2. 26.	2018년 결산 / 2019년 예산 / 정관일부개정(당연직이사 원장 포함) / 보수규정일부개정 / 이사 해촉·신규이사 선임	소집
2	2019. 4. 29.	예치금 사용(9,662천원) / 운영규정개정(정원 53→54명)	소집
3	2019. 9. 5.	2019년 1회 추경 / 예치금 사용(140,082천원) / 운영규정개정	소집
4	2019. 12. 6.	2019년 2회 추경 / 2020년 예산 / 운영규정개정	소집
(5)	2019. 12. 24.	2019년 3회 추경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관련 사업 명시이월	서면
6	2020. 3. 11.	2019년 결산 / 2020년 예산 / 정관일부개정 / 운영규정개정 / 안전 기본계획 / 이사 해촉·신규이사 선임	서면
7	2020. 8. 1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서면
8	2020. 8. 21.	원장 연임 승인 / 2020년 1회 추경 / 인사규정일부개정	서면
9	2020. 12. 1.	2020년 2회 추경 / 2021년 예산 / 예치금 사용계획(5,500천원)	서면
10	2020. 12. 22.	2020년 3회 추경	서면
(1)	2021. 3. 10.	2020년 결산 / 2021년 1회 추경 / 정관일부개정 / 운영규정개정 / 2021년 안전기본계획 /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	서면
12)	2021. 8. 5.	2020년 결산 수정 / 인사규정일부개정 / 보수규정 일부개정 / 복무 규정일부개정 / 물품관리규정일부개정 / 2021년 2회 추경	서면
(3)	2021. 12. 2.	2021년 3회 추경 / 2022년 예산 / 인사규정일부개정 / 보수규정일부 개정 / 복무규정일부개정	서면
<u>1</u> 4)	2021. 12. 27.	2022년 4회 추경	서면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청소년재단에서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은 이사회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수긍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 ① 이사회 운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 팀장 ○○○(현 ○○○○○○○○○ 팀장), 실무책임자 ○○○ 팀장 ○○○을 「경상남도 행정 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청소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조 치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1)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2021년도 청소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표 1]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T正	에선 팩	총액	국비	도비	1 8 C 7	0177
총계	328,536,000	328,536,000	177,366,000	151,170,000	-	
인건비	191,563,930	191,563,930	95,781,970	95,781,960	-	
사업비	90,000,000	90,000,000	63,000,000	27,000,000	-	6개 단위사업2)
운영비	46,972,070	46,972,070	18,584,030	28,388,040	-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sup>1)</sup> 학교 밖 청소년 :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sup>2)</sup> 시·군센터동행사업(9,000천원), 운영지원사업(16,000천원), 지역자원연계사업(5,000천원), 홍보사업(11,000 천원), 특성화사업(39,000천원), 도센터역량강화사업(10,000천원)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매뉴얼」 Ⅷ.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는 강사비, 자문수당, 인쇄비, 소모성 물품, 보험 가입비,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계획의 100만 원을 초과하여 예산 변경 필요 시 공문을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변경·집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제27조 (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2021. 1. 19. 경상남도에서 통보한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과-○○○○)에는 보조사업(예산서)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교부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이하 "○○○○○"라 한다)에서는 사업비가 항목 내에서 당초 계획의 100만 원 초과 등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시·군센터동행사업 등 6개의 단위사업이 포함된 2021년 청소년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 Zoom Meetings Business<sup>3)</sup> 연간 이용권('21. 11. 2. ~'22. 11. 1.) 계정<sup>4)</sup> 구입을 위해 [표 2]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군 ○○○○○○○ 지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없이 2021. 11. 2. 보조금 5,044,769원을 해외결제로 집행하였다.

[표 2] 시·군센터동행사업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비	당초 사업계획		집행내역		
(원)	사업내용	산출액(원)	사업내용	집행액(원)	
	계	9,000,000		9,000,000	
	사업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정기회의	3,000,000	시군센터 소통강화	313,201	
9,000,000	꿈드림 청소년단	3,000,000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2,542,030	
	성공 우수사례 선정	3,000,000	시군 우수사례 발굴	1,100,000	
			온라인 화상회의 연간 이용권 구입	5,044,769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Zoom Meetings Business 이용권의 추가 결제 방지를 위해 2022. 1. 20. 자동결제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연간 구독이 해지되어 3,210달러<sup>5)</sup>의 환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같은 해 2. 8. 경상남도 ○○○○○ 과에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sup>3)</sup> 참가자 최대 300명, 무제한 그룹 미팅, 모바일 접속 가능

<sup>4) 21</sup>개를 구입해 1개는 관리자용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0개는 시·군 ○○○○○○○에서 사용

<sup>5) 2022. 2. 11.</sup> 환율 1,198.5원 적용 시 3,847,185원

#### 관계기관 의견

청소년재단에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예산 집행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환불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재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납 예정 이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 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실무담당자 ○○○○○○○○○ 팀원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책임이 있는 실무책임자 ○○○○○○○○ 팀장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주의 요구

제 목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조 치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하 "청소년재단 ○○"라 한다)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복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1] 청소년재단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		30,000		
도배 및 바닥공사	84.88m²	9,350	난방 및 강화마루설치	
화장실공사	7.26m²	9,900	화장실2식 리모델링 등	′20. 4. ~
샷시 및 조명공사	샷시8개	7,289	이중창 샷시8개	'20. 12.
컴퓨터 및 침구 구매	-	3,461	컴퓨터, 모니터, 매트리스 각 1식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2. 계약체결 업체선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4. 사업비)에 따르면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기준"이라 한다)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해당 건설업면허를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의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3일 이상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예산서, 계획서, 품의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물량 또는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하고, 물량 또는 시기적으로 확정된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면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2020. 11. 19.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표 2]와 같이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26,537천 원을 전문면허를 소지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대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3일 이상과 2인 이상 견적 안내 공고하여 진행하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대한시스템 등 3개의 업체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 계약하였다.

[표 2] 분리발주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사업량	계약금액	계약일자	공사기간	시공업체	위반사항
계		26,537				
샷시 및 조명 공사	샷시공사, 내부조명공사, 간판조명공사 등	7,287		'20.11.19.~ '20.12.3.	대한시스템	2인 이상 견적 입찰 미진행, 분리발주
도배 및 바닥온열공사	도배공사, 바닥공사, 데코타일공사 등	9,350	′20.11.19.		창원종합 건축	
화장실공사	철거공사, 벽면공사, 타일공사 등	9,900		′20.11.19.~ ′20.12.1.	재성타일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3. 시설공사 관리·감독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및「지방계약기준」제6장 제2절(선금의지급) 및「지방계약기준」제13장 제10절 3(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발급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에서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확보해야하고, 하자책임담보기간 중에는 하자검사와 하자만료검사를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표 3]과 같이 선금지급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였고,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1. 12. 1.까지 하자만료검사도 하지 않았다.

[표 3]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 미확보내역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금액	선금지급액	채권확보여부	선금지급비율	신청업체
화장실 공사	9,900	4,950	미확보	50%	재성타일
도배 및 바닥온열 공사	9,350	4,675	미확보	50%	창원종합건축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청소년재단에서는 감사결과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면서 2020년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 시행 시 담당자 및 소장이 계약관련 법률이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보조금 교부날짜('20. 11. 13.)가 늦어져 입찰계약을 진행할 시 회계연도 내 공사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화장실의 온수기 고장, 누전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와 입소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하루빨리 화장실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보조금 교부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로부터 3일 이상과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하는데 소요된실제 공사기간 15일을 제외하고 30일의 기간이 남아 있던 상황으로 시급성에 따라분리발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규정 및 절차를 정확하게 추진하지 못한 책임은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있으나, 실무자의 면밀한 검토 없이 소장의 주도하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청소년재단「운영규정」4.복무규정 제5조(복무원칙)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 연찬 및 계약관련 교육을 통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수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무책임자 청소년재단 ○○ 소장의 퇴직으로 소장 주도하에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없고, 설령 소장 주도하에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 ① 문화체험공간 조성지원사업의 계약과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 담당자 ○○○○○○ 팀원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조 치 기 관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청소년재단「보수규정」제26조(초과근무수당)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 25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9조(준용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개인별 자기입력장치 전산 시스템(지문인식기, 마그네틱 카드 등)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 출근 시에는 출근 시) 초과근무

<sup>1)</sup>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일시보호사업, 상담정서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 문화체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에서는 전산시스템(지문인식기)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므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출·퇴근 내역과 사전등록한 시간외근무 내역을 비교하여 실제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청소년재단 ○○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제 출·퇴근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사전 등록한 시간외근무 내역만 확인하여 출·퇴근 내역이 없는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초과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019. 2. 22.부터 2021. 10. 14.까지 [표]와 같이○○○ 등 5명에게 총 13건 502,2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최근 3년간 청소년재단 ○○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원)

구분 일시 성명(직위) 부적정 지급액2) 계 502.280 2019. 2. 22. 12,200<sup>3</sup>)×1=12,200 000(00) 2019. 4. 11. 12,200×3=36,600 2019. 6. 14. 17,500×4=70,000 2019. 2. 28. 10,780×4=43,120 000(00) 2019. 4. 28. 10,780×4=43,120 000(00) 출·퇴근 내역 없이 지급 2020. 6. 27. 14,830×4=59,320 000(00)2020. 11. 28. 14,830×1=14,830 2021. 10. 14. 17,560×2=35,120 2020. 8. 17. 14,830×3=44,490 000(00)2021. 12. 9. 17,970×4=71,880

실제 근무시간보다	000(00)	2019. 4. 4.	12,200×3=36,600
로세 근무시신보다 초과하여 지급		2019. 5. 2.	17,500×1=17,500
		2019. 10. 25.	17,500×1=17,500

[출처 : 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청소년재단에서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규정 및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있고, 향후 재단의 「복무규정」제5조(복무원칙)에 따라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 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팀원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청소년재단「보수규정」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311,8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sup>2)</sup> 산출기준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부적정하게 지급한 수당시간

<sup>3)</sup> 청소년지원재단 보수규정 개정('19. 4. 29.) 이전 단가는 재단「보수규정」제26조(초과근무수당)에 따라 봉급기준액(5호봉)의 1/209×15할로 산정하고, 이후 단가는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함.